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 16.(월)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3년 1월 4일

○ 회부일자: 2023년 1월 5일

3. 제안이유

○ 위원회 기능과 목적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 등을 포함하여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미래교육협치위원회’ 를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로 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3조)
- ‘심의·조정’ 과 ‘심의’ 를 ‘자문’ 으로 함(안 제2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 위촉직 위원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3조)
- 정기회 개최를 ‘분기별 1회’ 에서 ‘연 2회’ 로 함(안 제9조)
- 간사를 ‘업무담당 사무관’ 으로 함(안 제10조)
- 제14조제3항을 삭제함(안 제14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¹⁾의 자문기관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교육감의 교육정책 결정과 추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자문하는 것을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주요기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하고, 교육정책 자문 관련 조문 정비와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을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기관에 맞게

1)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내실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주요 운영 현황

| 일 정 | 주요 내용 | 소요예산 |
|-----------------|--|---|
| 2020. 5.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 16,137,400 원 |
| 2020. 12. 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기 위원 20명 위촉 | |
| 2021.1.~2022.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회 11회 개최(10회 정기회는 참석위원 정족수 미달로 미개회) 임사회 2회 실무위원회 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위원은 전체 위원 20명 중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됨. 워크숍 3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 14,757,800원 |

○ 강원, 경기, 서울 등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본 조례 개정과 같은 맥락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관련 조례 없음

| 법 률 명 | 제 · 개정일 |
|--|--------------------|
| 강원 <u>교육발전자문위원회</u> 조례 | 2022. 6. 24. 일부개정 |
| 경기도 <u>교육정책자문위원회</u>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9. 4. 29. 제정 |
|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2019. 5. 23. 일부개정 |
|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2019. 8. 9. 제정 |
| 전라남도 <u>교육참여위원회</u>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9. 12. 26. 타법개정 |
| 충청남도 <u>미래교육자문위원회</u> 운영 조례 | 2019. 4. 10. 타법개정 |
|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0. 5. 15. 제정 |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 2022. 6. 29. 타법개정 |
| 대전광역시교육청 <u>교육정책자문위원회</u> 조례 | 2017. 4. 28. 제정 |
| 서울특별시교육청 <u>정책자문위원회</u> 설치·운영 조례 | 2022. 1. 6. 일부개정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u>미래교육자문위원회</u>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2. 2. 21. 타법개정 |
|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1. 11. 8. 일부개정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 2011. 6. 30. 일부개정 |

나. 주요내용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충북교육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을 자문으로 규정하여 주요 자문 사항을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충북교육정책 및 교육활동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를 포함시킨 것은 학교현장의 실제적인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과 추진에 대한 자문을 활성화시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학교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9조의 회의 규정에 위원회 정기회를 분기별 4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서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한 것은 위원의 참석률 저하 등에 따른 형식적인 정기회 개최나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기회를 축소하는 대신 임시회나 의제별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14조에 위원회 결과와 다르게 시행한 정책에 대해 교육감에게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교육정책 자문위원회가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기관이므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기관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첨부자료]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구분 | 개최일 | 안건명(내용) |
|----------------------|---------------------|--|
| 위촉장 수여식 및 제1회 임시회 | 2020.12.16.(수) | - 위촉장 수여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 제2회 정기회 | 2021.3.29.(월) | -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운영 세칙(안) |
| 임시 소위원회 | 2021.4.16.(금) | -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운영 세칙(안) 주요 내용 협의 |
| 제3회 임시회 및 워크숍 | 2021.5.10.(월) | -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운영 세칙 수정(안) - 2021. 주요업무 설명회 |
| 1차 실무위원회 | 2021.6.1.(화) | - 제4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
| 2차 실무위원회 | 2021.6.22.(화) | - 충북교육청 현안사업 안내 및 질의답변 - 제4회 정기회 안건 협의 |
| 제4회 정기회 | 2021.7.6.(화) | - 2021. 일반고 동반성장 종합 지원 계획 - 학생 상담지원 및 자살위기관리시스템 운영 - 학교 무선망 구축 및 원격수업 지원 -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 |
| 3차 실무위원회 | 2021.9.1.(수) | - 제5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
| 제5회 정기회 | 2021.9.14.(화) | - 2022 개정교육과정 추진 현황 및 계획 -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기본계획 - 2021. 충북 교육회복지원사업 추진 계획 - 미래교육협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선출 |
| 4차 실무위원회 | 2021.11.8.(월) | - 2021. 워크숍 운영 계획 협의 |
| 2021. 워크숍 | 2021.11.22.(월)) | - 2022. 주요업무 설명 및 질의·답변 |
| 5차 실무위원회 | 2021.12.9.(목) | - 제6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
| 제6회 정기회 | 2021.12.14.(화) | - 충북 기초학습안전망 운영 계획 |

| 구분 | 개최일 | 안건명(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형 공참여 교육복지 발전방안 - 모두가 꽃피우는 고교학점제 -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부모 자치활동 -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 제7회 임시회 및 고교학점제 포럼 | 2022.1.21.(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행정업무 경감 지원 현황 및 대책 - 고교학점제 포럼 운영 |
| 6차 실무위원회 | 2022.4.1.(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
| 제8회 정기회 | 2022.4.12.(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충청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 체험 운영 계획 - 2022. 학교 선거교육 및 참정권 교육 - 기후위기 대응 채식급식 운영 방안 -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권 보호 - 교복의제별위원회 운영 결과 |
| 7차 실무위원회 | 2022.6.3.(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
| 제9회 정기회 | 2022.6.15.(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 2022. 중복형 성장 아웃도어 교육 계획 - 2022. 독서·인문소양교육 기본계획 - 모듈러교실 증축 및 활용(안) |
| 8차 실무위원회 | 2022.9.27.(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
| 제10회 정기회 (정원미달 미개의) | 2022.10.25.(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이음교육 활성화 지원 - 관계회복 조정 기구 운영 - 교육공동체 건강 프로그램 운영 - 기초학력진단평가 개선 방향 및 로드맵 |
| 9차 실무위원회 | 2022.11.8.(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회 정기회 일정 및 안건 협의 - 2023년도 주요업무 관련 워크숍 일정 |
| 2022. 워크숍 | 2022.11.2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주요업무 설명 |
| 제11회 정기회 | 2022.12.6.(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조직개편 방향 및 계획 - 기초학력진단평가 개선 방향 및 로드맵 - 학교지원센터 의제별위원회 운영 결과 - (보고)교복 의제별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관계회복 조정 기구 운영 |

자료제공: 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조례안 예고문에 대한 의견 접수 검토 및 조치 결과

- 조례안 예고기간: 2023. 1.6. ~ 1.11.
- 의견접수: 총 7건
- 의견접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출자 | 개 정 안 | 의 견 제 출 내 용 | 조례안 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결과 |
|---|--|--|---|
| 강창수(전교조충북지부) 홍성학(충북교육연대) 김성훈(충북교육발전소) 이선영(충북참여저지시민연대) 조장우(평등교육실현을 위한충북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조충북교육청지부 | 1.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현행)「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지방자치법」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미래교육협력위원회」를 ‘교육정책자문위원회’로 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3조) | 미래교육협력위원회를 교육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교육행정이 민간부분과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동행하기보다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일방적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개정안에 반대. | ○ 미반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행 미래교육협력위원회의 경우 법률적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기관이고, ‘자문’의 사전적 의미 측면에서 볼 때도 자문은 ‘어떤 일을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다’는 의미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교육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
| 강창수(전교조충북지부) 홍성학(충북교육연대) 김성훈(충북교육발전소) 이선영(충북참여저지시민연대) 조장우(평등교육실현을 | 3. ‘심의·조정’과 ‘심의’를 ‘자문’으로 함(안 제2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 ‘심의·조정’을 ‘자문’으로 하게 되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고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자문위원회로 바꾼다는 것은 교육을 위한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반대. | |

| | | | |
|---|---|--|---|
| <p>위한충북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조충북교육 청지부</p> | | | |
| <p>강창수(전교조충북지부)</p> | <p>4. 당연직 위원을 부교육감, 기획국 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에서 기획국 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함(안 제3조)</p> | <p>부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협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북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반영 가능하므로 기준대로 유지해야 함.</p> | <p>○ 미변영 - 주요교육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 업무의 실질적인 결정과 진행은 각 부서의 과장과 각 국장에 있고 부교육감이 주관하는 간부회 등을 통하여 전 부서가 공유하며, 보고체계를 통하여 부교육감은 물론 교육감까지 결제를 거쳐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 사료됨.</p> |
| <p>강창수(전교조충북지부) 홍성학(충북교육연대) 김성훈(충북교육발전소) 이선영(충북참여저차시민연대) 조장우(평등교육실험을 위한충북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조충북교육 청지부 충북열린교육포럼(김규진 외 회원)</p> | <p>5. 위촉직 위원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충청 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 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3조)</p> | <p>충북교육의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시민사회와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는 것은 ①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협치하기 위함 ② 시민사 회가 마을교육네트워크나 교육정책추진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 위촉직 위원의 2항을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단체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충청북도교육청과 시민사회영역이 협력의 성과를 무시하는 개정안임. 미래교육의 협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동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함.</p> | <p>○ 미변영 - 충북교육정책 및 교육활동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가 현행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부모 참여를 명시하고, 현행 조례의 '지역 시민사회 단 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교육 관련 단체'로 용어를 변경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위 원회를 축소시켰다고 판단할 수 없음. 오히려 학부모 참여와 교육 관련 단체로 명시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교육적 필요와 요구에 대한 논의와 정책 반영을 강화할 수 있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됨.</p> |
| <p>강창수(전교조충북지부) 홍성학(충북교육연대) 김성훈(충북교육발전소) 이선영(충북참여저차시민연대)</p> | <p>6. 정기회 개최를 '분기별 1회'에서 '연 2회'로 함(안 제9조)</p> | <p>정기 회의의 연 2회 개최로 축소하면 교육정책의 반영이 매우 어려움. 정기회의회의를 분기1회(연4 회)에서 연2회로 축소되어 충북교육정책에 대한 논의횟수의 감소로 인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p> | <p>○ 미변영 - 위원회 정기회를 분기별 4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서</p> |

| | | |
|--|---|--|
| <p>조장우(평등교육실현을 위한충북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조충북교육청지부 충북열린교육포럼(김규진 외 회원)</p> | <p>해질 수 있어 개정안에 반대함.</p> | <p>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한 것은 집행청 담당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잦은 정기회 개최 및 실무위원회 개최가 형식적인 정기회 개최나 위원의 참석을 저하,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정기회를 축소하는 대신 임시회나 의제별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마련을 통한 회의 운영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협의될.</p> |
| <p>강창수(전교조충북지부) 조장우(평등교육실현을 위한충북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조충북교육청지부</p> | <p>기구가 협치기구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이므로 기존대로 업무부서의 장이 담당해야 함</p> | <p>7. 위원회 업무담당 간사를 업무담당 부서서장에서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수정함(안 제10조)</p> |
| <p>강창수(전교조충북지부) 홍성학(충북교육연대) 김성훈(충북교육발전소)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조장우(평등교육실현을 위한충북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조충북교육청지부 충북열린교육포럼(김규진 외 회원)</p> | <p>충북교육정책결정에 있어 전문 분야별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연구와 협의, 의견 제안과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충청북도교육감은 그 이유를 논의의 당사자들과 소통할 의무가 있음.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협치가 아닌 독선적인 행정임.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답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함.</p> | <p>8. 제14조제3항을 삭제함(안 제14조)</p> |
| <p>충북열린교육포럼(김규진 외 회원)</p> | <p><제안이유> 위원회 기능과 목적에 따라 조례명 위원회 기능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p> | <p><중립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조례개정 후 2년간 미대교육 협치위원회를 운영하며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거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p> |

| | | |
|--|---|--|
| <p>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학부모 또는 교육관련 단체 등을 포함하여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함.</p> | <p>라 조례명을 변경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으로 '학부모 또는 교육관련 단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기재 되어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 3조(구성)와 실제 1기 미래교육협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학부모, 교육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효율성과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한다는데, 어떠한 미비점이 존재하는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조례전부개정 의 근거가 상당히 부실하다. | <p>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기관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타당한 조례 개정이 라 사료됨</p> |
|--|---|--|

■ 조례안 예고 의견 조치결과: 처리결과를 2023년 1월 12일 의견 제시자에게 통보함.